

1. 총칙 (General)

- 1.1. 본 약관은 매도인이 상품 (이하 “상품”) 의 판매 및 인도를 위하여 하는 청약과 매도인에 대한 상품의 판매 및 인도의 주문,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 1.2. 제3자 또는 매도인 (이하 “매수인”) 이 제시하는 조건은, 매수인이 제공하는 이점 또는 이후의 주문이나 기타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다.
- 1.3. 매수인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수송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범위에서만 본 약관과 상충되는 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 매도인이 그러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수용하고, 해당 조항과 본 약관 간에 불합치가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한다.

2. 청약, 주문 및 계약 (Offers, Orders and Agreements)

- 2.1. 매도인의 모든 청약은 구속력이 없다.
- 2.2. 매수인은 주문 또는 매도인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취소할 수 없다.
- 2.3.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문이나 청약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만 구속된다. 직원에 의한 또는 직원과의 구두 약속 또는 합의는 매도인이 이를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매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 2.4. 체결된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3. 가격 (Price)

- 3.1. 매도인이 정하거나 매도인이 동한 가격은 부가가치세 및/또는 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위 가격에는 Incoterms 2010에 규정된 운송비지급인도 조건(CPT)이 적용된다.
- 3.2.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가격을 검토하고 조정할 권리와, 매수인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선적 일과 당시 유효한 상품 가격을 적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4. 인도기간과 인도 (Delivery Period and Delivery)

- 4.1. 인도기간은 (i) 계약이 체결되고, (ii) 매도인이 요구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고, (iii)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이 선금금을 받거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물 제공받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 이후에 개시된다.
- 4.2. 모든 선적 및 인도 일자는 예측 일자에 불과하다. 매도인이 합의 또는 약정된 인도기한 이내에 선적 또는 인도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하고, 이후 매수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상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서면 통지로 지연된 주문을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 4.3. 불가항력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연된 경우, 인도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이 동의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인도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 4.4.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문 또는 매수인과의 계약을 위하여 상품을 일부씩 나누어서 그리고/또는 개별화사를 통하여 인도할 권리가 있다. 본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각 일부 인도는 별개의 인도로 간주된다.
- 4.5. 매도인은 어느 날이라도, 해당 상품의 이용가능성 및 매도인이 이용가능한 상품을 그 내부적 이용 및 다른 매수인들을 위하여 분할할 권리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알려진 매수인의 예상 연간 구매량을 10% 초과하거나, 예상 연간 구매량이 없을 경우 이전 12개월간 매수인의 평균 과거 구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매도인의 적재량은 선적지점에서 측정된 것으로 적용된다. 매도인은 수송 경로를 정할 권리가 있다.

5. 운송 및 장비 (Transportation and Equipment)

- 5.1. 매도인은 운송 준비를 함께 있어 단독으로 운송 수단, 일정 또는 기타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5.2. 매도인은, 매수인이 파란한 컨테이너, 탱크, 트럭 및/또는 기타 운송장비가 (i) 즉시 적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ii) 매도인과 모든 관련 정부당국의 안전 규칙에 부합하며, (iii) 적재와 관련한 매도인의 모든 지시가 지체없이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운송장비를 적재하는 데 합리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 5.3. 매도인의 세미 볼크 컨테이너 (semi bulk container) 및 (기타) 장비로서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은, 매수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매도인의 요구나 당사자들간 명시적 합의에 따라서 모든 반환일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합의되거나 예정된 용도에 따른 사용이 끝난 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매도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 5.4.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상품 용기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식음, 물, 농산물, 약품 또는 화장품 용기로 재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위험, 소유권, 지적재산권 (Risk, Title, Intellectual Property)

- 6.1. 상품의 훼손 또는 멸실에 관한 위험은 매도인이 해당 상품을 인도한 시점 또는 매도인이 그 인도의무에 이행한 시점 중 먼저 충족되는 시기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6.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비용 및 이자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해당 주문이나 계약 및/또는 이전이나 이후의 동일한 성격의 주문들이나 계약들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시점까지, 매도인이 판매하고 인도한 모든 상품을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이 갖는다. 위와 같은 대금 지장이 완료되면, 매수인은 상품에 관하여 유지권 또는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6.3. 인도된 상품에 대한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은 매도인 또는 관련된 권리가 있는 제3자가 보유하며, 상품의 구매 시에 결코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6.4.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상품을 연구, 분석, 분해 또는 역설계를 수행하거나, 상품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5.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매도인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 수령 (Inspection, Acceptance)

- 7.1. 매수인은 상품이 약정된 장소에 인도되었을 때 이를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품 수령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한 운송비용, 보관비용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7.2. 매수인은 상품 실물 인도 시에 상품의 중량 및 수량과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 7.3.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과 관련된 클레임은 본 약관 제9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제9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 7.4. 부족분 (중량 및 수량) 과 관련된 클레임은 실물 인도 후 십사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방식에 의하여 정당한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인도를 준비하거나 또는 부족분의 비율만큼 매수인에게 신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족분에 관하여, 매도인은 상기 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7.5. 매도인의 항공우주 및 산업원료 사업 (Aerospace and Industrial Materials businesses) 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매도인이 인도한 수량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일 경우 이는 주문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은 실제 운송된 수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불가항력 (Force Majeure)

- 가.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동원령 (Mobilisation), 혁명, 봉기 또는 건물의 화재, 파업, 특정 업무방해 또는 준비부족, 테러 및 사업장폐쇄, 운송장해, 원료 또는 에너지 부족;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주문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지연, 사업운영상 사고와 방해, 정부 개입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하 “불가항력사유”)에 의하여 주문이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방해되거나 지연되고, 매도인이 그러한 불가항력사유에 의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주문 및/또는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정지된다. 또한 매도인은 이용가능한 원자재와 상품을 그 내부적 사용 및 다른 매수인들을 위하여 제공할 권리가 있다. 불가항력사유가 사(4)주 이상 지속될 경우, 본 약관 제13조를 침해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영향을 받은 주문 또는 계약의 실행가능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9. 보증 (Warranty)

- 9.1. 매도인은 상품이 자신의 상품명세서와 일치함을 보증한다. 판매된 상품, 사용설명서, 또는 기 제공된 기술지도에 대하여 적합함(Fitness), 지적재산권 침해(Infringement) 또는 기타 다른 사정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상품의 사용 또는 이용에 관하여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대표자가 제공한 기술 자료 또는 권고는 신뢰할 수 있으나, 매도인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는 상품의 가용이나 사용에 따라 인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 또는 기타 하자에 대하여 본 약관에 따라 매도인에게 클레임이 제기되고 매도인이 이를 발의할 경우, 매도인은 제당에 따라 무상으로 다시 상품을 인도하거나 문제된 상품의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신물을 제공할 수 있다.
- 9.2.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십사 (14) 일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관하여 제품 보증책임을 물을 권리를 상실한다.
- 9.3. 그 외 하자와 관련된 클레임은 하자를 발견한 날부터 십사 (14) 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에 관하여 제품 보증책임을 물을 권리를 상실한다.
- 9.4. 가. 매도인의 지시에 따른 운송 또는 보관 방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상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지시 또는 요구된 목적 또는 통상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 매수인이 관련 주문이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도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위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보증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 9.5. 매도인의 인도한 상품의 하자 일체와 관련된 책임은 본 약관에 규정된 보증의무로 제한된다.

10. 책임 (Liability)

- 10.1.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실이익을 포함한 결과적 손해, 간접적 손해, 특별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10.2. 본 약관상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제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액수는 손해의 발생과 관련된 인도된 물건의 가격을 한도로 한다.

- 10.3. 매도인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십이 (12)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10.4. 매도인이 주문이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한 매도인의 직원 또는 수급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관련 계약 및 본 약관상 모든 방어수단을 그러한 계약들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다.

11. 지급 및 담보 (Payment and Security)

- 11.1. 매수인의 지급은 매도인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급청구일부터 삼십 (30) 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언제라도 전체 또는 일부 대금의 선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있거나 그 밖에 지급에 대한 담보물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 11.2. 매수인은 당사자 사이에 청구된 채무를 상계할 권리를 포기한다. 보증에 관한 청구권이 있어도 매수인의 지급의무는 정지되지 않으며, 그러한 청구권은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11.3. 매수인이 상기 규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는 대금을 적절한 방식으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지 없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즉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납입에는 청구권은 이행기가 도래하고, 매수인은 즉시 그 관련 청구권과 관련하여 통지 없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 날부터 한 달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에 대한 일 일퍼센트(1%)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전매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RESELLERS, DISTRIBUTORS AND EXPORTERS)

- 매수인이 상품 일부를 수출, 유통 또는 전매하고자 할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12.1. 관계 (RELATIONSHIP). 매수인은 독립적인 수출업자, 유통업자 또는 전매업자로서 행위하여야 하며, 자기 계산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본 약관, 관련 계약 또는 주문에 따른 이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비용과 지출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기타 보상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자신의 고객과의 지급불능 또는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매도인의 수권 대표자가 서명한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계열회사로서 행위할 권한이 없고 그와 같이 행세할 수 없으며, 매도인이나 매도인의 계열회사를 대리하여 또는 그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도인이나 매도인의 계열회사를 구속하거나 구속하고자 하지는 아니 된다.
- 12.2. 포장 및 표시 (PACKAGING AND LABELING). 매도인의 사전 서면 승인으로 제조장이 허용되지 않은 한, 매수인은 상품을 제조장하거나 매도인의 라벨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도인이 원래 상품을 포장한 용기에 담아서만 상품을 전매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언제라도 상품의 라벨이나 매도인이 작성한 명세서에 명시된 용도 또는 목적 외의 용도 또는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 홍보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3. 수출 통제 (EXPORT CONTROL). 매도인의 상품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 일체는 모든 측면에서 당시에 기술 및 제품의 수출, 허가 또는 인도를 규율하는 법령 및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매수인은 수출국 또는 상품 원산지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의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관련 기술 정보를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매수인은 관련 당국으로부터 상품이나 매수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된 기술 정보의 수출, 재수출 및/또는 한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전 서면 승인을 취득하지 않는 한, 직간접적으로 상품이나 기술 정보를 금지 국가에 수출, 재수출 또는 한전하지는 아니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12.4. 금지 고객 (PROHIBITED CUSTOMERS).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권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승인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서는 군사기기, 무기 또는 생물, 화학 및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무기의 연구 또는 생산에 관여하는 공적 또는 사적 단체에 상품을 전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 12.5. 인허가 (LICENSES AND APPROVALS). 매수인은 매도인의 상품 판매와 매수인의 상품 구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 있는 모든 수입 허가 및 정부 승인을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할 것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매수인은 모든 관련 관할권의 등록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은행 및 기타 정부당국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정부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유통업자 또는 전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조건과 상품의 주문, 수출, 선적, 수입, 판매(정부조달 포함), 인도 또는 재인도를 규율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 규제 또는 명령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매수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정부 법령, 규제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본 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매도인의 합리적인 믿음에 따라 매도인이 어느 관할 법령을 위반하도록 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 12.6. 보험 (INSURANCE). 매수인이 상품을 유통 또는 전매하는 기간 동안, 매수인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할 것에 동의한다: 전당 2,000,000달러/총합 5,000,000달러의, 수입인책임보험(Independent Contractor), 생산물배상책임보험(Completed Operations/Products) 및 종합계약책임보험(Blanket Contractual Liability)을 포함한 전체 상품 및 장비뿐만 아니라,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종합일반배상책임보험(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매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보험에 대한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13. 지연금지, 해제가능 (Suspension, Recession)

- 13.1.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적절한 방식으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으로 선언되거나 (임시적) 지급유예 요청을 하거나 사업의 정상전진을 진행하거나 자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되거나 기타 유사한 절차 또는 조치에 관련될 경우, 매도인은 비용, 손해배상 및 이자에 대한 청구권 이외에도, 사전 채무불이행 통지 없이 서면 선언으로써, 그 선택에 따라 주문 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 13.2. 매수인은 본 약관 4.2조와 8.1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한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당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원을 지급할 후야에 해제할 권리가 있다.

14. 분쟁 및 준거법 (Dispute and Applicable Law)

- 14.1. 매도인이 다른 관련 법원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주문을 확인한 매도인의 본국이 등기된 소재지 관할 법원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 14.2.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모든 계약은 주문을 확인한 매도인의 본국이 등기된 소재지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14.3. 매수인에 대한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법률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15. 가분성 (Severability)

- 본 약관의 하나 이상의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한 부분 또는 규정은 해당 규정의 본래 목적을 가능한 범위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전체 계약을 취소하거나 유효한 나머지 조항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16. REACH

- 유럽회의 및 이사회 No. 1907/2006 화학물질관리규정 (REACH Regulation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이하 “REACH”)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상품, REACH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의된 상품의 화학분석 및/또는 화학물질과 공급된 각 혼합물은 모든 용도의 등록 의무를 확장하기 위하여 REACH 제37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알리고 새로운 사용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등록의 업데이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추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부패방지 부준제 (NO CORRUPT PRACTICES)

-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전매업자로서 행위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인의 주문 시점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매수인은 그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중 누구도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나 정당 또는 공적 후보자의 공무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증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기 진술에 대한 예외를 조례하게 되거나 조례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칭으로 매도인에게 또는 매도인을 위하여 정부,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무원, 대리인 또는 직원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 또는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치 있는 물건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제공을 계의, 약속 또는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각 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에게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 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통지 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